

아름다운 여수, 행복한 시민



제 208 호
2017년11월8일(수)

여 수 시 보

시 정 방 침

- 1. 함께하는 소통시정
- 1. 활력있는 지역경제
- 1. 수준높은 교육복지
- 1. 앞서가는 해양관광
- 1. 걱정없는 안전사회

■ 발행인 : 여수시장 ■ 발행소 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3 FAX) 659-5803

목 차

【고 시】

○ 여수시 고시 제2017-30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/3

【공 고】

○ 여수시 공고 제2017-2141호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/4

회 판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

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

「주택법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11. 8.

여 수 시 장

1. 사 업 명 : 여수시 문수동 대성베르힐아파트 신축공사
2. 사업주체 : 디에스종합건설(주) 대표 임홍남
3. 사업위치 : 여수시 문수동 717-3외 36필지
4. 대지면적 : 44,319m²
5. 건축면적 : 9,485.0783m²
6. 연 면 적 : 109,012.1665m²
7. 규 모 : 아파트 10개동(지하2층/지상15층), 부대복리시설 7동
9. 사업기간 : 2017. 11. 15. ~ 2020. 10. 31.
10. 총사업비 : 174,062,000천원
11. 주요 변경내역
 - 사업기간 변경
 - (당초) 2017. 5. 15. ~ 2020. 5. 15.
 - (변경) 2017. 11. 15. ~ 2020. 10. 31.
12.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(☎659-4120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공 고

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(행정상 입법예고)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1월 7일

여 수 시 장

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1. 개정이유

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중 추천 인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공개 모집을 추가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보장하고, 읍·면·동 별로 설치되는 지역회의 위원 임기를 변경하여 지역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「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조정(안 제6조)

- 위원회 수 조정 : 85인 이내 → 60인 이내
- 지역회의 추천 : 63인 이내 → 27인 이내
- (신설) 공개 모집 : 15인 이내
- 비영리 민간단체, 시민·사회단체 및 학계 추천 : 20인 이내 → 10인 이내
-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추천 2명 →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8인

나.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 (안 제11조)

-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일부 조정 가능

다.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한 위원 임기 변경(안 제15조)

- 읍·면·동 별로 설치되는 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변경

3. 개정 규칙안 : 붙임

4. 예고기간 : 2017. 11. 8. ~ 11. 28.(20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7년 11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기획예산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(gikwang0906@korea.kr)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 제출 사항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○ 의견 제출할 곳

- 가. 주 소 : 우)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
- 나. 받는 사람 : 여수시장(참고 : 기획예산과)
- 다. 전화번호 : 061)659-3419, 팩스 061)659-5872

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기획예산과(담당자 백기광)로 문의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규칙명 :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

제6조제2항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5호를 신설한다.

1.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·면·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: 27인 이내
2. 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: 15인 이내
3.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자로서 시에 소재하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: 5인 이내
4.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·사회·직능단체, 기관, 학계에서 추천한 자 : 5인 이내
5.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: 8인 이내

제6호제3항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5항을 삭제한다.

- ③ 제2항제1호의에 따라 각 읍·면·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는 읍·면·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,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공개모집 주민 중 1인 으로 한다.
- ④ 제2항제1호, 제3호, 제4호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“별지 제1호 서식”에 의하며 제2항제2호, 제5호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.

⑤ 삭제

제11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.

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.

- ② 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각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15조의2제3항은 삭제한다.

③ 삭제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추천서

성 명	(한글)	생년월일	성별	남, 여
	(영문)	E-mail		
주소(거소)	우편번호(-)			
직장	직장주소			
전화번호	휴대폰)	주택)	직장)	
개인정보 취급동의	「개인정보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		
추천 단체명	단체구분 :			
	단체명 :			
참여희망 분과위원회	분과명 : ①행정지원 ②복지환경 ③관광문화 ④보건위생 ⑤농업 ⑥도시건설			
	제1희망)	제2희망)	제3희망)	
	※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			

※ 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여주시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
위 사람을 여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.

20 . . .

○○단체장 - 직인

여 수 시 장 귀하

위 축 장

주 소 :
성 명 :

귀하를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
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여 수 시 장

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가입 신청서

성 명	(한글)	생년월일		성별	남, 여
	(영문)	E-mail			
주소(거소)	우편번호(-)				
직장(학교)명		직장(학교) 주 소			
전화번호	휴대폰)	주택)	직장)		
개인정보 취급동의	「개인정보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			
참여하게 된 동 기					

※ 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여주시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

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 : (서명)

읍·면·동장 귀하

위원회 주민참여예산(분과위원회) 회의록 지역회의

				간 사	부위원장	위원장	결 재
일 시				장소			
참석상황	재적위원	참석	불참	(불참위원)			
안 건							
<p>○ 심의내용</p> <p>○ 의결사항</p> <p>○ 기타사항</p>							
서명위원	성명	(서명)		성명	(서명)		

※ 위원별 주요발언 내용 등 회의록은 별도작성 첨부

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 신청서

성 명	(한글)	생년월일	성별	남, 여
	(영문)	E-mail		
주소(거소)	우편번호(-)			
직장	직장주소			
전화번호	휴대폰)	주택)	직장)	
개인정보 취급동의	「개인정보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위원 선정 목적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			
참여하게 된 동 기				
참여희망 분과위원회	분과명 : ①행정지원 ②복지환경 ③관광문화 ④보건위생 ⑤농업 ⑥도시건설			
	제1희망)	제2희망)	제3희망)	
	※ 참여희망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반드시 기재			

※ 타 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여주시 신청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
위 본인은 여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가입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 : (서명)

여 수 시 장 귀하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<u>포함한 85인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을 20/100이상으로 하며 동일 기관·단체 소속 위원은 15/100이내로 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1.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·면·동 주민참여예산 <u>지역회의의 위원 추천 : 63인 이내</u></p> <p>2. <u>시에 주소를 두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500인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추천 : 15인 이내</u></p> <p>3. <u>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·사회·직능 단체 추천 : 5인 이내</u></p> <p>4. <u>여수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: 2인 이내</u></p> <p>5.<신설></p> <p>③ 제2항제1호의 위원은 각 읍·면·동</p>	<p>제6조(구성) ① ----- -----<u>포함하여 60인 이내로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</u> ----- -----<u>여수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-----..</u></p> <p>1. ----- -----<u>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: 27인 이내</u></p> <p>2. <u>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: 15인 이내</u></p> <p>3. <u>예산 및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자로서 시에 소재하는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: 5인 이내</u></p> <p>4. <u>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·사회·직능단체, 기관, 학계에서 추천한 자 : 5인 이내</u></p> <p>5. <u>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: 8인 이내</u></p> <p>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각 읍·면·</p>

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과 공개모집 주민위원 각 1인 이내로 한다. 단 인구 8,000명 이상의 읍·면과 인구 20,000명 이상의 동 지역은 공개모집 주민위원 1인을 추가한다.

④ 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추천 인원은 각 1인 이내로 한다.

⑤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위원 추천은 "별지 제1호 서식"에 의한다.

제11조(분과위원회)①~⑦(생략)

⑧<신설>

제15조(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)①(생략)

②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구성하며,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~ ⑧ (생략)

제15조의2(회의소집 및 의결)①(생략)

② (생략)

③ 지역회의는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.

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는 읍·면·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,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공개모집 주민 중 1인 으로 한다

④ 제2항제1호, 제3호, 제4호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"별지 제1호 서식"에 의하며 제2항제2호, 제5호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

⑤<삭제>

제11조(분과위원회)①~⑦(현행과 같음)

⑧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.

제15조(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)①(현행과 같음)

② 지역회의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각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5조의2(회의소집 및 의결)①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제>